무배당

넘버원 Step-up 변액연금보험

하나HSBC생명보험주식회사

확 인 서

무배당 넘버원Step-up변액연금보험을 개정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2년 6월 18일

하나HSBC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서종무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구성

가. 무배당 넘버원 Step-up 변액연금보험 적립형

구분	내용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정액형	10년 보증, 20년 보증, 100세 보증
	체증형(5%, 10%)	10년 보증, 20년 보증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나. 무배당 넘버원 Step-up 변액연금보험 거치형

구분	내용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정액형	10년 보증, 20년 보증, 100세 보증
	체증형(5%, 10%)	10년 보증, 20년 보증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2.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구분			적립형	거치형
연금지급개시나이			45세 ~ 80세 (다만, 부부연금형 남자의 경우 48세 ~ 80세)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만15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보험료 납입기간 - 7]세	만15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0]세

3.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적립형	거치형
보험료 납입기간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 ~ [연금지급개시나이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 5]년납 (10년납 이상은 1년단위 선택 가능)	일시납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보험료	월납	일시납
	추가납입보험료	수시납	-

다만, 적립형의 경우 납입완료 후 연금지급개시시까지 최소 7년의 거치기간이 있어야 한다.

4. 납입보험료의 한도

이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된다.

가. 적립형

(1) 기본보험료: 계약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금액은 1구좌 기준으로 매월 10만원(다만, 3년납은 5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의 만원단위 금액으로 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료의 납입기간까지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시중금리가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추가납입한도를 상기의 한도의 9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매회 10만원이상 만원단위 금액으로 한다.

나. 거치형

(1) 기본보험료: 계약 시점에 납입하는 일시납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 취급하지 아니함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 없음

6.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적립형 및 거치형 약관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적립형 약관 제50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및 거치형 약관 제45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경우 「7.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에 관한 사항」, 「8. Step-up 보증(스텝업 보증)에 관한 사항」 및 「9.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에 관한 사항」,「12. 연금지급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의 '다' 및 '라',「13. 연금지급에 관한 사항」의 '가', 「14.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의 '가' 및 '나'에서 정하는 에서 정

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또는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인출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시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시 계약자적립금}}$$

- 감액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직전(또는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해당 인출(감액) 발생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7.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에 관한 사항

가.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나.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시점에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8. Step-up 보증(스텝업 보증)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저연금적립금은 증액될 수 있다. 다만, 최저연금적립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8. Step-up 보증(스텝업 보증)에 관한 사항

가. Step-up 보증(스텝업 보증)

Step-up 보증(이하 '스텝업 보증'이라 한다)이란 '나'에서 정한 Step-up기간(이하 '스텝업 기간'이라 한다) 동안 스텝업 테스트를 거쳐 해당 단계에 해당되는 보증금액을 새로운 최저연금적립금으로 재조정하여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최초 가입시 보증금액은 '나'에서 정한 '0단계'의 보증금액으로 하며, 스텝업 기간 동안 계약자적립금이 스텝업 보증금액으로 재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0단계'의 보증금액을 최저연금적립금으로 보증한다. 또한, 스텝업 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금개시 계약해당일까지는 스텝업 기간 종료일의 스텝업 보증금액을 최저연금적립금으로 보증한다.

나. 스텝업 기간, 스텝업 보증금액 및 스텝업 테스트

(1) 스텝업 기간

기본보험료의 납입기간 완료일(연단위 계약해당일 기준) 이후(다만, 3년납 및 일시납의 경우 5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연금개시나이 -3년」시점에 해당하는 달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

(2) 스텝업 보증금액

회사가 운영하는 스텝업 보증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스텝업 보증금액
3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0%
2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50%
1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30%
0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6.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의해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3) 스텝업 테스트

스텝업 기간동안 매 3개월의 계약해당일(계약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이후 가장 가까운 영업일)마다 계약자적립금을 평가하여 스텝업 보증금액을 결정한다.

평가전 단계	테스트	평가후 단계
0단계	계약자적립금 ≥ 1단계 스텝업 보증금액	1단계
	계약자적립금 < 1단계 스텝업 보증금액	0단계
1단계	계약자적립금 ≥ 2단계 스텝업 보증금액	2단계
	계약자적립금 < 2단계 스텝업 보증금액	1단계
2단계	계약자적립금 ≥ 3단계 스텝업 보증금액	3단계
	계약자적립금 < 3단계 스텝업 보증금액	2단계
3단계	-	3단계

9.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에 관한 사항

가. 스텝업 기간이 시작하는 계약해당일부터 연금개시 시점까지 매 금요일(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이후 가장 가까운 영업일)의 계약자적립금이 단계별로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에 도달할 경우에는 해당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을 모두 채권형(3형) 펀드에 이전한다.

단 계	기 준 금 액
3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70%
2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27.5%
1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0.5%
0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85%

나. ‘가’의 경우가 발생한 날의 익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이후 가장 가까운 영업일)부터 매1개월 시점(‘가’의 경우가 발생한 날의 익월 말일을 포함함)마다 평가하여 계약자적립금이 ‘가’에서 정한 각 단계별 기준금액 이상일 때에는 계약자적립금을 해당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가’의 경우가 발생하기 전에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산투입한다. 회사는 ‘나’로 인한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생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6.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의해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정의)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3)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은 특별 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최고한도 이내에서 회사가 결정하며, 변경된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서 유지되고 있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적용한다.

(4)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준비금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4]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여 적립한다.

(5)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은 사망시점에 사망보험금이 최저사망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사망보험금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6)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준비금은 생존연금 개시시점의 특별계정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의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7) ‘(4)’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은 계약소멸, 해지(부활가능기간이 지난 계약) 등 감소

계약에 대한 보증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호로 한다

① 채권형(3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② 인덱스(INDEX)혼합형(3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지수) 등을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③ 주식혼합형(3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④ 안정성장형(3형): 주식(거래소 및 코스닥주식 포함,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50%이내를 투자하고,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관 등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⑤ 인덱스성장형(3형): 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관 등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며, 주식 (거래소 및 코스닥주식 포함, 관리종목은 제외), 주식형 수익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50%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 등을 목표지수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⑥ 글로벌혼합형(3형): 국내·외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 수익증권(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에 순자산(NAV)의 30%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우량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한다. 다만, 주식 등에의 투자는 아시아 등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위주로 운용하되 시장상황

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동 펀드는 2007년 2월 23일 설정된「실크로드혼합형」의 명칭을 변경한 펀드임.)

⑦ 이머징브릭스주식성장형(3형): 신흥 이머징마켓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BRICs 지역에 속하는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수익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포함)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6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선물 등) 및 수익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40% 이상을 투자 한다.

(2) '(1)'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 또는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1)'의 투자 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4)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회사가 정한 범위내에서 기존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한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신규 펀드 추가로 인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신규 펀드를 선택할 수 없다.

다. 펀드자동재배분

(1) 계약자는 계약시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만, 3년납 및 일시납의 경우 계약후 5년이내) 펀드 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투입비율로 자동 재배분 된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만, 3년납 및 일시납의 경우 계약후 5년이내) 펀드의 투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투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 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자동 재배분 된다.

(3)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만, 3년납 및 일시납의 경우 계약후 5년이내)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4) 펀드 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나'에서 규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펀드 각각에 대하여 펀드별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다만, 이머징브릭스주식성장형(3형)과 글로벌혼합형(3형)의 편입비율 합계는 50% 이내로 한다) 또한, 매년 12회의 범위에서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2) 추가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며,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된다.

(3)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한다)는 '(1)' 또는 '(2)'에서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된다.

(4) '(1)' 내지 '(3)'에도 불구하고, 「8. Step-up보증(스텝업보증)에 관한 사항」 중 '가'에 의해 최저연금적립금이 스텝업 보증금액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되는 계약해당일의 채권형(3형) 펀드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 비율이 각 스텝별 '의무선택비율'이상이 되어야 하며, 증액 이후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시에는 채권형(3형) 펀드의 비율이 각 스텝별 의무선택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텝의 보증금액으로 증액되는 계약해당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채권형(3형) 펀드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의 비율이 각 스텝별 '의무선택비율'이 되도록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자동조정하며, 증액 이전에 채권형(3형) 펀드 이외의 펀드가 선택된 경우에는 채권형(3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적립금은 증액이전의 각 펀드별 계약자적립금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연금지급개시시점까지 운영한다.

회사는 보증금액이 증액되면 아래에서 정한 채권형(3형) 펀드 의무선택비율에 따라 자동조정 된다는 내용을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변액보험 주요내용확인서를 통하여 계약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

구 분	채권형(3형) 펀드 의무선택비율
1단계 스텝업 보증금액으로 증액되는 경우	30%
2단계 스텝업 보증금액으로 증액되는 경우	40%
3단계 스텝업 보증금액으로 증액되는 경우	70%

다만, 위에서 정한 의무선택비율이 해당 스텝의 보증금액으로 증액되는 시점에 이미 충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조정 없이 기존의 펀드별 편입비율이 계속 유지된다.

(5) '(1)'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시에는 보험계약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따라 일부 펀드의 선택이 제한 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펀드선택의 제한없이 펀드변경이 가능하여, '(1)' 또는 '(2)'에 따라 '나'에서 정한 펀드 내에서의 편입비율 변경 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편입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

(6) 계약자의 펀드변경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 이전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펀드 적립금의 이전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회사는 '①'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②'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④ 펀드 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 요구는 「펀드 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바.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사.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1)'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② '(1)'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 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아.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자.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③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④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2)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차. 특별계정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①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②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③ '①' 내지 '②'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3) 회사는 '(1)' 및 '(2)' 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1.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2. 연금지급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이전에 다음의 연금지급형태 중에 변경하여 선택할 수 있다.

연금지급형태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정액형	10년 보증, 20년 보증, 100세 보증
	체증형(5%, 10%)	10년 보증, 20년 보증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형		
실적연금형 (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		

나. 연금지급형태 변경 후의 보험기간

구분			적립형	거치형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실적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	

다. 연금지급형태의 복수 선택

(1) 계약자는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 의 연금지급형태 중 최대 2개까지의 연금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2) '(1)'에서 2개의 연금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한다.

(3) '(1)'에서 2개의 연금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연금 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액(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 분할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연금 형태에 최소 30%이상의 계약자적립액을 분할하여야 한다.

라. 실적연금형 운용에 관한 사항

(1)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1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에 따라 운용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2) 「1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동일한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경우, 기준가 산정시 매일 차감되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은 매년 계약해당일까지 이 보험의 보장계약 예정이율로 일반계정에서 부리한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으로 이체하여 계약자의 보유좌수를 증액한다. 다만, 매년 계약해당일 이전에 보험계약의 해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 계약이 더 이상 유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일까지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실적연금형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3) 계약자(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연금 지급을 요청한 날을 연금지급 이체사유 발생일로 하며,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4) 실적연금형의 지급주기는 매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급 주기는 연금지급기간 내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5) 계약자(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5년 이상의 범위에서 1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일 현재 실적연금형의 연금지급 책임준비금이 120만원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 만료일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13. 연금지급에 관한 사항

가. 연금액 계산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연금액 계산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나'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나. 연금액 계산시 적용 이율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액 및 연금지급개시 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다만, 「12. 연금지급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가'」에 의해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시이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한다.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 내에서 정한다.

(3)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①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 지출율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② 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times 100$$

I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E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A_{12} : 산출시점 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A_0 : 산출시점 직전 1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③ 외부지표 산출식(%) = $(B_1 + B_2 + B_3) / 3$

B_1 : 국고채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B_2 : 회사채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B_3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text{가중이동평균이율}(B_i) = \frac{B_i(-3)\times 1 + B_i(-2)\times 2 + B_i(-1)\times 3}{6}$$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1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각각의 이율은 각 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 월의 당월 15일까지의 국고채 평균수익률, 회사채 평균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 세부 지표 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내부지표 및 외부지표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4) '(2)'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2)'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5)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한다.
(6)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 시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한다.
(7)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른다.

14.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다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19. 기타」의 '가'에 따라 이체한다.
(2) 연금의 형태 중 실적연금형의 연금 개시된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과 계약자적립금의 차액 중 실적연금형 분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3) 연금의 형태 중 실적연금형의 매년 계약해당일이 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실적연금형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적립액에 해당하는 금액
(4)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5)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2)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는 경우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5)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다만, 월공제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6)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① 연금지급개시일에 해당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적연금형 해당 분할 금액은 제외한다)
② 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금이 회사가 보증한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준비금을 사용하고,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클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준비금 중 해당 계약의 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의 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일반계정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 중 해당 계약의 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의 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액(납입후 유지비 포함) 지급이 있는 경우

(8)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한 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15.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하고,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

나. '가'에 따라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1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 「6.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 '나' 에 따라 계산한다.

라.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하다.

마. '가' 및 '라'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유지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다.

바. ‘가’ 내지 ‘마’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적립금 인출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6.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가.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시점
3년납	신청불가
5년납	3년
7년납	4년
10년이상	5년

나. ‘가’의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이후의 납입기일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로 인하여 연기된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부터 연금개시나이까지의 기간이 최소 거치기간 미만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보험료 납입완료시점부터 최소 거치기간이 지난 후 최초의 연계약해당일로 연기된다.

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가능횟수는 총 5회를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누적하여 36개월(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의 신청은 월단위로 가능하다.

마.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바. 회사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의 종료(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및 보험료 납입에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사. '다' 및 '바' 에서 월계약해당일은 보험계약일부터 1개월 단위로 경과된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한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한다.

아. '다' 및 '바'에서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보장계약 보험료 및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한다.

17.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이하 '연체보험료'라 한다)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 납입하지 아니한 기본보험료는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된 기본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제외, 연체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시점의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다. '나'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된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연체된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연체된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된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연체된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이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승낙일로 한다.

라. '가'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적립형 약관 제38조(계약전 알릴의무) 및 거치형 약관 제33조(계약전 알릴의무) 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립형 약관 제39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거치형 약관 제34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18.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이전에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2. 연금지급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에 의해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도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 계정에 적립한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11. 계약자적립금의 계산'의 계약자적립금에 포함되며, 대출시 펀드별 분배 비율은 대출일 기준 펀드별 적립금 비율로 한다)

다. 계약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은 상환일로부터 「상환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한 후, 「상환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펀드별 분배금액 비율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투입하고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회사는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라.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다만, 실적연금형은 '나'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19.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1)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외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별 판매 방침에 따라 일부 납입기간 및 연금지급형태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나.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2) '(1)'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제1회 보험료는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대하여 펀드별 투입비율로 가중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②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경우 납입기일의 전전일(前前日)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 납입기일 전일(前日)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제2영업일」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납입기일의 전전일(前前日)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기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납입기일의 전일(前日)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후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고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하며, 납입기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③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 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다.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다만, 실적연금형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특별계정에서 운용한다.

라. 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 체결 이후 제1보험기간 동안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계약자적립금 변동에 관한 사항

(2)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마.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특별계정 총좌수

(2) 특별계정 기준가격

(3) 특별계정 자산총액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7)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8)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9)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바. 이 보험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적립형 계약보험가입금액 = 기본보험료 × 12 × Min [보험료 납입기간, 10]

(2) 거치형 계약보험가입금액 =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사. 지급여력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는 지급여력기준 산출대상에 포함 한다. 다만, 실적연금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아. 적립형의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

(1) 적립형에 한하여, 기본보험료가 30만원 초과인 경우 기본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매월 기본보험료	할인율
30만원 초과 50만원 미만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부분의 0.5%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0원 + (기본보험료 중 50만원 초과부분의 1.4%)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000원 + (기본보험료 중 100만원 초과부분의 1.6%)
200만원 이상	Min { 24,000원 + (기본보험료 중 200만원 초과부분의 2.0%), 기본보험료의 1.5% }

(2) 보험기간 중 해당 보험계약 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하다가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을 이유로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고액계약 할인율을 적용한다.

자.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의 90%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차.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카. 한 건의 계약으로 여러 계좌를 가입할 경우에는 한 계약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보험계약 청약서로 운영할 수 있다.

타. 재간접투자기구 관련 공시에 관한 사항

회사는 「1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의 '나'」에서 정한 펀드 중 다른 간접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별계정운용보수 이외에 해당간접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가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 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파. 선납보험료

(1) 선납보험료는 당월 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2)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하고 월계약해당일에 당월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당월 기본보험료를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한다.

하. 생존연금(종신연금형) 지급에 관한 사항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